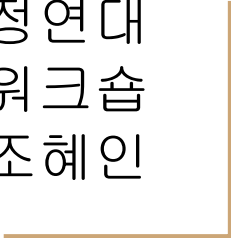


차별금지법 : 내용과 쟁점

차별금지법제정연대
기지개 워크숍
20170525 조혜인



연혁: 17대 국회

-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「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」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
- 2006. 7. 24. 국가인권위원회, 국무총리에 「차별금지법안」을 권고
- 2007. 10. 2. 법무부,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
- 2007. 12. 12. 법무부,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추가삭제된 형태의 차별금지법 발의(병력, 출신국가, 언어,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,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, 성적 지향, 학력)

연혁: 17대 국회

- 2007. 12. 시민사회·인권단체, ‘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’ 결성(이하 반차별 공동행동)
- 2008. 1. 28. 노회찬 의원 등 차별금지법 발의
- 2008. 5.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양 법안 모두 자동 폐기

연혁: 18대 국회

- 2010. 2~12. 법무부, 차별금지법 특과분과위원회 운영
- 2010. 12. 시민사회·인권단체, 반차별 공동행동의 제안으로 ‘차별금지법제정연대’ 결성
- 2011. 9. 15. 박은수 의원(민주통합당) 등 11인 차별금지기본법 발의
- 2011. 12. 2. 권영길 의원(통합진보당) 등 10인 차별금지법 발의
- 2012. 5.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양 법안 모두 자동 폐기

연혁: 19대 국회

- 2012. 11. 6. 김재연 의원(통합진보당) 등 10인 차별금지법 발의
- 2013. 1. 23. 법무부, 제2차 UPR 권고 수용 등에 관한 정부 입장 답변(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수용 /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.검토 과정에서 성적 지향 포함 여부 검토 예정)
- 2013. 2. 12. 김한길 의원(민주통합당) 등 51인 차별금지법 발의
- 2013. 2. 20. 최원식 의원(민주통합당) 등 12인 차별금지법 발의
- 2013. 4. 24. 김한길의원, 최원식의의원 대표발의안 각각 철회
- 2016. 5.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김재연 의원안 자동 폐기

차별금지법안의 구조

1장	총칙	목적, 정의, 차별의 개념과 예외
2장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의무	5년마다 차별시정기본계획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
3장	차별금지 및 예방조치	영역별로 금지되는 차별을 실체적으로 규정 (고용 / 재화용역서비스 / 교육 / 행정)
4장	차별의 구제	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

차별금지법안의 내용과 쟁점

제1장 총칙

주요 내용	쟁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목적, 정의, 차별금지원칙 등○ 금지되는 차별의 범위-차별금지사유: 국가인권위원회법의 19개 사유를 기본으로, 차별금지사유를 가감하여 규정-차별의 유형: ①직접차별 ②간접차별 ③괴롭힘 ④차별을 표시·조장하는 광고행위 (⑤복합차별)-차별금지의 예외: ①진정직업자격 ②적극적 우대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차별금지사유*괴롭힘 사유---*차별금지사유와 정의*차별금지의 예외*혐오표현의 문제

차별금지법안의 내용과 쟁점

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의무

주요 내용	쟁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정부는 5년마다 차별시정기본계획 수립.시행○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.시행	<p>*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 마련하도록 하는 안, 국무총리소속하에 차별금지정책위원회 설치하여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하는 안 등</p>

차별금지법안의 내용과 쟁점

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

주요 내용	쟁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영역별로 금지되는 차별을 실체적으로 규정-제1절 고용-제2절 재화, 용역, 교통수단, 상업시설, 토지,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-제3절 교육기관의 교육·직업훈련-제4절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-(법안에 따라) 제5절 괴롭힘	*차별금지의 범위와 예외

차별금지법안의 내용과 쟁점

제4장 차별의 구제(1)

주요 내용	쟁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절차- 인권위에 차별 진정 → 인권위법에 따른 조사 및 구제-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요청, 소송지원제도- 시정명령권(이행강제금)제도 →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소제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시정명령 (이행강제금) 제도*시정명령권한자

차별금지법안의 내용과 쟁점

제4장 차별의 구제(2)

주요 내용	쟁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사법(司法)적인 권리구제절차-법원의 임시조치-법원의 적극적 판결 및 손해배상-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-입증책임의 배분-고용 관련 사용자의 정보공개의무-불이익조치금지 및 벌칙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징벌적 손해배상*정보공개의무

차별금지법안의 내용과 쟁점

기타 쟁점

- 법안의 명칭: 차별 vs. 평등
- 개별법과의 관계

국제사회 권고

○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(CCPR/C/KOR/CO/4)

차별금지

12. 위원회는 대한민국 내에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여러 개의 개별법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도,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부재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. 특히 인종 차별과 성적지향,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바이다. (제 2조, 26조)

13. 대한민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종,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여야 한다. 이 법은 공공 및 민간 영역의 행위자들에 의한 직접·간접 차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,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.

국제사회 권고

-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(CERD/C/KOR/14)
-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 제1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(UPR) 보고서 (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PR, A/HRC/8/40)
- 2009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(E/C.12/KOR/CO/3)
-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(CEDAW/C/KOR/CO/7)
-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(CRC/C/KOR/CO/3-4)
- 2012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(CERD/C/KOR/15-16)
- 2012년 유엔 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(UPR) 보고서 (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PR, A/HRC/22/10)

외국입법례

<p>캐나다 인권법 (Human Rights Act 1977)</p>	<p>인종, 출신국가 또는 출신민족, 피부색, 종교, 연령, 성별, 성적 지향, 혼인지위, 가족지위, 유전적 특성(*2017. 5. 19. 신설), 장애, 사면된 전과</p>
<p>뉴질랜드 인권법 (Human Rights Act 1993)</p>	<p>성별, 혼인지위, 종교적 믿음, 윤리적 믿음, 피부색, 인종, 출신민족 또는 출신국가, 장애, 연령, 정치적 의견, 고용지위, 가족지위, 성적 지향</p>
<p>아일랜드 평등법 (Equality Act 2004)</p>	<p>성(gender), 혼인지위, 가족지위, 성적지향, 종교, 연령, 장애, 인종·피부색·국적·출신국가·출신민족, 유랑공동체소속</p>
<p>독일 일반평등대우법(2006)</p>	<p>인종, 출신민족, 성별, 종교 및 세계관, 장애, 연령, 성적 정체성</p>
<p>영국 평등법 (Equality Act 2010)</p>	<p>연령, 장애, 성전환, 혼인 및 (동성간)시민결합, 인종, 종교 또는 신념, 성별, 성적 지향</p>